##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90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이수진·김문수·송옥주

김준혁 • 전종덕 • 용혜인

김동아 · 서미화 · 이원택

김종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'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'로 선포하면서,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 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, 매년 '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'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 음.

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'돌봄의 날'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15호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돌봄의 날) ①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돌봄의 공 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 로 정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돌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	법률 제20415호 의료・요양 등
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	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
륟	물
<u> &lt;신 설&gt;</u>	제4조의2(돌봄의 날) ① 돌봄의
	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돌
	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
	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
	을 돌봄의 날로 정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
	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
	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	③ 제2항에 따른 돌봄의 날 기
	념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
	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